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04
----------	-----

제출년월일 : 1999. 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제안이유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제551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직장협의회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이 5급 이하인 기관과, 초·중·고·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통합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함. (안 제2조)
- 나. 법률에서 정한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관장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안 제3조)
- 다.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안내문을 7일이상 게시토록 하고, 설립 사실 통보서를 받은 기관장은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교부 받은 날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봄. (안 제4조)

- 라. 협의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하도록 함. (안 제5조)
- 마. 협의회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사명령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으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일자로 협의회를 탈퇴한 것으로 봄. (안 제6조)
- 바.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도록 함. (안 제8조)
- 사.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 아. 협의회의 운영은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함. (안 제13조 내지 제15조)

제정조례안 : 붙임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설립 ·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설립 ·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설립 ·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직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 이하인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과 초 · 중 · 고 ·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 자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 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2이상의 기관 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 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 단위는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 교육 행정 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교육청 본청, 직속 기관, 지역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소속 기관 단위를 말하며, 국 · 과 및 담당 판 등 보조 기관 및 보좌 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

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국·과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④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제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以内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협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④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②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한다.

2.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 ②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④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 ⑤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 ⑦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회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명 칭		
대 표 자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회 원		○○○와 명
설립총회 개최현황	일 시	
	장 소	
	참석회원수	○○○와 명
	결의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lt;첨부서류&gt;

-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 협의위원회명부·회원명부(소속, 기관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명 칭	
	근무부서
대 표 자	직 급
	성 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별지 제3호서식]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

명 칭		
대 표 자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보완을 요하는 사항		
보 완 이 유		
보 완 기 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에 대하여 위와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위 본인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가입(탈퇴)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날인)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귀하

## 관 계 법령 발췌 서

###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1998.2.24. 법률 제551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③ 협의회를 설립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가입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중 6급이하의 외무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5.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비·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제4조(가입 및 탈퇴의 자유)**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기관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협의회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장의 의무)** ①기관장은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한 경우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관장은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의 설립단위·가입범위·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시기·방법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현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의사국의 설치 등) ①교육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사국을 두고, 의사국에는 의사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국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④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임명한다.

## □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